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추 진 단 의
구 성 및 운 영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아시아문화원의</u> 지원	5. <u>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u> -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 단	
연 락 처	(044) 203 - 2347